

시설물 관리실태 특별감사 결과

□ 감사개요

- 감사목적 : 시설물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실태를 특별감사
- 감사기간 : '13. 3. 4 ~ 3. 22 (15일)
- 감사중점
 - 위탁역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
 - 역사내 시설물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
 - 시설물 장애 및 사고처리의 적정성
 - 시설물 하자관리 및 취약개소 관리의 적정성
 - 민원사항 및 지적사항 처리의 적정성 등
- 감사결과 : 개선 8건, 신분조치 3건(경고 2건, 주의 1건)

□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

연번	지 적 내 용	처분요구
1	위탁역 대장류 관리강화 방안 마련 - 위탁역에 대장관리의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역 운영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에 각종 대장류 관리(비치 및 기재 사항 등 확인) 상태를 추가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	개 선
2	역사 청소용역 검수개선 청소검수조서 양식을 통일하여 검수의 일관성을 확보하시기 바라며, 아울러 검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- 검수조서에 시설물별 청소주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소과업의 적정수행 여부를 해당역장 및 역무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, - 검수조서 서명시 역무원 뿐만 아니라 역장이 최종 서명토록 하여 역사 청소감독에 대한 역장 책임성을 강화하며,	개 선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계실, 전기실 등 주요시설물이 위치한 장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실 관리부서 직원의 감독하에 청소를 실시하고 검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 	
3	<p>관제전화 통화녹음 운용기준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화녹음에 관한 관련규정과 실지운용이 상이하므로 종합관제팀 전화에 대하여 회선별로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규정과 운용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. - 아울러 통화녹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(개인정보 보호원칙),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이용)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. 	개 선
4	<p>축전지 내부저항 측정주기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전지의 적정성능 확보를 위하여 IEEE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내부저항 측정주기를 조정·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	개 선
5	<p>비상용 전기콘센트 관리방안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터널내부 비상용 콘센트의 보호덮개 적정쇄정 여부를 점검하여 분실 또는 파손된 보호덮개를 신속히 재설치 하시기 바라며, - 향후 적정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타부서의 비상용 콘센트 사용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 	개 선
6	<p>극락교~공항역 구간 터널배수로 관리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극락교 ~ 공항역 사이 지하수 유출구간의 터널배수로로 취약개소로 지정하여 배수기능 적정여부를 집중관리 하시기 바랍니다. 	개 선
7	<p>송정리역 국철연결통로 CCTV 사각지대 해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송정리역 에스컬레이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CCTV 카메라 위치(각도)를 조정하시고, 위치(각도) 조정으로 사각지대 미해소시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 	개 선
8	<p>외부 엘리베이터 CCTV 지지대 녹발생 방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지지대의 녹발생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도색·교체 등을 시행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	개 선

9	<p>부가통신 작업 입회 소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업 입회 소홀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입회자라는 중대한 직무를 소홀히 함이며, 이는 취업규칙 제6조(성실의무 등) 제1항의 ‘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’를 위반 하였기에 △△△팀 ○○○에 대하여 신분상 “경고” 조치 하고, - 직상감독자인 △△△팀 ○○○은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입회에 대한 소극적관리라는 인식은 물론,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입회에 대한 교육·지시 등을 충분히 하였다 할 수 없으며, 이는 취업규칙 제6조(성실의무 등) 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한 직원·상사의 책임 소홀로 신분상 “경고” 조치, - 아울러 △△△팀 ○○○은 팀 총괄 관리자로서 교육·지시한 점은 인정되나, 입회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교육·지시자와 상이함을 볼 때, 지시사항 이행여부 미확인 등 관리 책임 소홀로 판단되어 신분상 “주의” 조치 	신분상 (경고2) (주의1)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